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20336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20336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합51675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양희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이원근, 김태완

변론종결 2024. 2. 29.

판결선고 2024. 3. 2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합51675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와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30. 접수 제113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피고와 C 사이에 2020. 6. 29. 체결된 933,373,3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3,37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16행의 “매매계약”을 “매매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9행의 “7. 13.”을 “7. 14.”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 이희준, 판사 김광남

1) 피고는 제1심판결에 처분문서의 증명력, 통정허위표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은 C과 피고와의 관계와 현금의 흐름, 이 사건 매매예약서 작성 경위,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것이므로, 처분문서의 증명력, 통정허위표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제1심판결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잘못 특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정허위표시라고 보는 이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